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태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56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5년 6월 17일

발 의 자 : 김태수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동욱·권미경·유동균·최관술·
서영진·맹진영·성백진·김현아·
우형찬·김동윤 의원(10명)

1. 제안 이유

서울시는 시내버스운송사업·마을버스운송사업·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에 등록을 한 자에 대해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고,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정(공포 : 2014.1.28.)으로 택시 공영차고지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서울시 공영차고지 사용이 추진되고 있는 바,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서울시 공영차고지 사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사업자간 형평성을 담보코자 함

2. 주요 골자

가. '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' 대상에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추가함(안 제4조제1항)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조표(별첨)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1항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